



성동구보건소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민원 처리((주)퓨처켄)

관내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이 있어 약사법 제45조제2항, 제46조,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검토 후 현장 조사한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처리 하고자 합니다.

<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>

허가번호	명칭	종별	소재지	대표자	비고
113	(주)퓨처켄 (***** 0260311	방사성의약품 도매	연무장3길 21, 2층 (성수동2가)	지대운 (1955. 8. 13.)	·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득함 (제13-1139-00호, 2015.12.23. 원자력안전위원회) ·허가조건: 방사성의약품 판매에 한정함

1. 허가증 발급일자: 2016년 2월 12일
 2. 허가번호: 제113호
 3. 안내사항
 - 허가증이 발급되었사오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의료과로 오셔서 허가증을 찾아가시기 바라며, 면허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허가증 수령시 준비할 사항: 신분증 및 면허세(40,500원).
- 붙임: 1.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(안) 1부.
 2. 시설조사보고서 1부.
 3.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. 끝.

의약팀장

이남희

보건의료과장

代**이남희**

보건소장

02/12
김경희

협조자

시행 보건의료과-2233 () 접수 ()

우 0470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 보건소 3 / <http://bogunso.sd.go.kr>

전화 02-2286-7050 / 전송 02-2286-7062 / lnh8470@sd.go.kr / 부분공개(6)